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북구

내 용

울산광역시 북구(○○○과)에서는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¹⁾을 지원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자연재해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농산물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자 같은 개인보조사업자에게 2016년과 2017년에 보조금²⁾을 지원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1) 사업명 : 2017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사업비 91,196,400원(국비 17,600,000원, 시비 13,200,000원, 구비 13,200,000원, 자부담 47,196,400원)

2) 사업명 :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내재해형 신규하우스 설치)

사업비 : 2016년 사업비 97,930천원(보조금 47,063천원, 자부담 50,867천원)

2017년 사업비 68,200천원(보조금 26,809천원, 자부담 41,391천원)

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울산광역시 복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보조사업자는 실제 수행할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해야하며 사업 물량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 신청하여 보조금을 실제 사업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존 사업 내용을 변경하려거나 집행 금액을 변경할 시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관서에 승인을 받고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실제 수행할 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지 확인하고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2017년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울산광역시 북구(○○○과)에서 2017년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보조사업자 ○○○에게 지원할 때 확정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은 ○○○○○○(77,008,400원)과 ○○○○○○○(14,188,000원)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고,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주)○○○○○○○○에 총 사업비 91,196,400원을 지급하여야 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로 88,196,400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액 3,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통장을 해지하였다.

위 관서에서 사업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를 검토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초 사업 확정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에야 보조사업자는 ○○○○○○○로 보조금 전액을 송금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었던 감리비용의 목적으로 300만원을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위 관서의 계도에 따라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300만원을 입금한 후 (주)○○○○○○○○로 전액 송금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총액이 ○○○○○○○로 모두 지급이 되었지만, 위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과 금액을 변경하여 당초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을 하였다.

2. 2016년 농산물생산시설 현대화 보조금 사업비 과다 산정

위 관서에서는 2016년과 2017년에 농산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형 신규하우스 설치 지원) 보조금을 동일한 보조사업자인 ○○○에게 지원하였다.

하지만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과 2017년의 사업은 ○○○형 신규하우스를 설치하는 동일한 사업이며 설치하는 하우스의 규격과 물량이 동일하고 시공업체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크게 차이(26,730천원)가 났다.

[표1] 2016년과 2017년 보조사업 내용

	2016년	2017년
사업명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형 신규하우스 설치)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형 신규하우스 설치)
사업기간	2016. 11월~12월	2017. 6월~8월
사업비	총 97,930천원 (보조금 47,063천원, 자부담 50,867천원)	총 68,200천원 (보조금 26,809천원, 자부담 41,391천원)
세부내용	○○○○○-○○○-○(○○○○○형) 비닐하우스 설치공사(94,930천원)	○○○○○-○○○-○(○○○○○형) 비닐하우스 설치공사(68,200천원)
	감리비(3,000천원)	
사업량	1,260㎡ (폭7m*길이45m*4연동)	1,260㎡ (폭7m*길이45m*4연동)
시공업체	㈜○○○○○○○○	㈜○○○○○○○○

※ 울산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하여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규격과 물량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재료비와 노무비가 2017년과 비교하여 2016년이 더 컸으며, 재료비와 노무비에 따라 일정비율로 책정되는 경비, 일반관리비 등도 크게 산정되어 있었다.

[표2] 2016년과 2017년 공사원가계산서 비교

(단위 : 원)

			2016년(A)	2017년(B)	차이(A-B)
순공사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51,137,000	38,912,000	12,225,000
		간접재료비	1,419,000	1,088,000	331,000
		소계	52,556,000	40,000,000	12,556,000
	노무비	직접노무비	26,242,578	16,412,520	9,830,058
		소계	26,242,578	16,412,520	9,830,058
	경비		4,261,084	2,857,476	1,403,608
	순공사원가 합계		83,059,662	59,269,996	23,789,666
일반관리비		1,433,672	905,690	527,982	
이윤		1,806,666	1,824,314	△17,648	
공급가액		8,6300,000	62,000,000	24,300,000	
부가가치세		8,630,000	6,200,000	2,430,000	
총계		94,930,000	68,200,000	26,730,00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더구나 재료비의 경우 동일한 설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 공사의 재료 수량 산출량과 재료의 단가가 아래 [표3]과 같이 큰 차이가 있었다.

[표3] 2016년과 2017년 재료 수량 및 단가 차이

(단위 : 원)

품명(규격)	2016년			2017년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기둥(각60*2.3*3.5m)	20,000	116	2,320,000	16,500	100	1,650,000
마무리기둥(각60*2.3*3.5m)	20,000	80	1,600,000	16,500	40	660,000
가로대(25.4*1.5*10m)	10,000	500	5,000,000	11,000	400	4,400,000
선판조리개(32*25)	700	1,500	1,050,000	600	1,000	600,000
비닐고정패드(칼라6m)	5,000	350	1,750,000	4,500	300	1,350,000
독립기초(300*500)	20,000	166	3,320,000	18,000	140	2,520,000
일중비닐(PO필름) 박스 (0.15*560*60m)	1,420,000	2	2,840,000	1,130,000	2	2,260,000
일중비닐(PO필름) 박스 (0.15*400*60m)	1,020,000	2	2,040,000	820,000	2	1,640,000
컨트롤박스	3,000,000	1	3,000,000	1,300,000	1	1,300,000

※ 울산광역시 북구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부고시 제2014-78호)에 따르면 내재해형규격 시설에 대한 시설별 자재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 기준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위 기준에서 제시된 비닐하우스 규격은 1050㎡(7m*3연동*50m)으로 2016년 위 보조사업 공사 규모(1260㎡)보다 8/10정도의 규모로 다소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아래 [표4]와 같이 재료비 총액과 재료 단가 차이가 컸다.

[표4] 2016년 보조사업과 한국농업시설협회 기준 간 차이

(단위 : 원)

품명(규격)	2016년 보조사업 공사(1,260㎡)			한국농업시설협회 기준(1,050㎡)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재료비 총액	52,556,000 (㎡당 41,711)			38,422,744 (㎡당 36,593)		
기둥(각60*2.3*3.5m)	20,000	116	2,320,000	12,460	100	1,246,000
중방(각60*2.1*7m)	33,000	80	2,640,000	22,750	60	1,365,000
가로대(25.4*1.5*10m)	10,000	500	5,000,000	11,000	400	4,400,000
하우스밴드	50,000	20(박스)	1,000,000	4,700	15(2kg)	70,500
개폐모터(DC24V)	100,000	22	2,200,000	71,000	14	994,000
컨트롤박스	3,000,000	1	3,000,000	650,000	1	650,000

※ 울산광역시 복구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노무비의 경우 동일한 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5]와 같이 일위대가표를 2017년에는 특별인부 100인, 보통인부 40인 투입으로 작성한 것에 비해 2016년에는 특별인부 145인, 보통인부 101인 투입으로 작성되는 등 큰 차이가 있었다.

[표5] 2016년과 2017년 일위대가표(노무비)

규격 또는 치수		원수	
		2016년	2017년
골조설치비	특별인부	81인	60인
	보통인부	59인	30인
피복설치비	특별인부	64인	40인
	보통인부	42인	10인

※ 울산광역시 복구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2017년 공사가 2016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연결 설치하는 공사로 좀 더 수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노임이 상승한 2017년에 비해 2016년 노무비가 60%나 더 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2017년 사업이 2016년의 사업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이며 동일한 업체가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비해 26,730,000원이 적은 금액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사실로 보아, 위 보조사업자는 2016년의 재료비 수량 및 단가, 노무비 등 사업비를 2017년의 동일한 사업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산정하여 집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지적된 두 개 사업의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는 모두 동일한 개인 및 업체로서 이러한 보조금 부당집행 행위가 반복하여 일어나는 등 위 관

서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시정] 위 사업에 대하여 다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보조사업자 제재, 수사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